

2010 한국교회SR포럼

ISO 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10년 10월 8일(금) 오후 2~5시
명동 청어람

/ 주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최 한국교회SR위원회(준)

2010 한국교회SR포럼



발행일 _ 2010년 10월 8일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조제호
편집 _ 전선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trust@trusti.kr
www.trusti.kr

한국교회SR위원회(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법률가회, 목회사회학연구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를 공동주관단체로 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라임글로벌, 엔씨스콤 등과 협력합니다.

- **사회** 양용희 위원장 (한국교회 SR위원회, 엔씨스콤 대표)
- **격려사** 주철기 사무총장(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교회 SR위원회 자문위원장)
임성빈 공동대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 기초발제 30분

ISO26000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황상규 박사 (SEIN 이사, ISO26000 전문위원) 7

■ 핵심주제별 발제 각 20분

거버넌스와 공정운영관행

황호찬 교수 (세종대 경영대학원, 기독교경영연구원 CSR센터장) 24

인권과 노동관행

김종철 사무국장 (기독교법률가회,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30

지역사회와 환경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36

■ 토론 30분

■ 질의시간

2010 한국교회SR포럼 :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열며

지난 2008년 교회의 사회적 책임2.0 심포지엄, 2009년 4회에 걸친 교회의 사회적 책임2.0포럼을 시작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사회적책임'이라는 화두를 한국교회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 고민의 연장선으로 조금은 낯설은 ISO26000이라는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한국교회를 초청하고자 포럼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ISO26000이라는 국제표준과 한국교회와의 상관관계를 풀기 위해 올해 초 한국 내 사회적책임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교회SR위원회(준)를 꾸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하여 양용희 엔씨스컴 대표, 황상규 ISO26000 전문위원, 최혁준 라임글로벌 대표를 포함한 여러 SR전문가그룹들과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법률가회, 목회사회학연구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등 기독교내 다양한 전문단체들이 '교회의 사회적책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ISO26000 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은 사회적책임의 원칙과 사회적책임을 구성하는 쟁점,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인 실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뿐 아니라 정부 및 NGO, 노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사회적책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ISO 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는 ISO26000이 갖는 국제적 공신력을 한국교회가 따라가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5년여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논의인 만큼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이나 사회봉사로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교회 내에서 세대간 갈등, 정치적 의견차이 등으로만 비춰졌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교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물론 교회 내 거버넌스, 노동관행과 인권, 공정운영 등의 문제까지도 사회적 책임의 관점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생각하여 교회의 안팎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ISO26000이라는 국제적 표준이 긍정적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흘러 들고 소통되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박은조 백종국 이동원 임성빈 주광순

* ISO 26000은 2004년 10월 제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문서에서 유래합니다. 사회적 책임(SR) 표준 개발을 위한 신규작업항목 제안서의 문서번호가 ISO/TMB N 26000이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2005년 1월 ISO 회원국의 찬반투표를 통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책임 작업반(WG SR)의 제 1차 총회(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부터 ISO 26000이라는 규격 번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ISO 26000은 전세계 91개국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발효될 예정입니다.

■ 격려사 ■

오늘 한국교회SR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양용희 위원장님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교계의 건전성과 공의의 구현을 위해 기여해 오셨습니다. 특히 올해 ISO26000이 채택됨에 따라 사회적책임이 확실한 국제적 이행가치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기운실은 ISO26000의 출범이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와 거버넌스, 인권, 노동, 공정운영,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 교회의 참여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ISO26000교회표준을 개발하여 한국교회의 참고로 내놓을 것이 기대됩니다.

유엔이 그간 추진해 온 글로벌콤팩트나 ISO26000의 기본정신은 바로 사회에 대한 신뢰성(Trust)의 문제, 투명성(transparency)의 문제,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잠언 21장 3절에 있고, 또한 “공의를 강과 같이 흐르도록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사 11:4)

오늘날 한국은 G20 주최국, 한-EU FTA체결 등 세계 속에서 들림을 받는 나라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강국의 위치도 갖추고 후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원조 등의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결과로 자칫 몰량화, 대형화에 빠질 때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잃고 맘몬숭배, 권력숭배에 빠져들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사회적책임운동은 원래 기독교정신의 바탕에서 나온 바가 큼니다. 글로벌시대 사회적책임의 화두가 대세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세계적 조류와 우리 교회의 실상을 비교하며 새로운 갱신과 혁신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가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우리 교회와 사회가 주님의 보시기에 흠족하실 공의의 교회, 공의의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좌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철기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교회SR위원회 자문위원장)

ISO26000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항상규 | SEIN 이사, ISO26000 전문위원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이란 무엇인가 ?

-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규격/표준/가이드라인/가이던스
- 주제 : 모든 조직이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소비자, 환경, 공정관행, 지역사회공헌 등 7개 분야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및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대상 : 초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그 범위가 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NGO 등으로 확대 중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DIS 26000



Secretariat: TMB/WG SR

Voting begins on:
2009-09-14

Voting terminates on:
2010-02-1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NORMAL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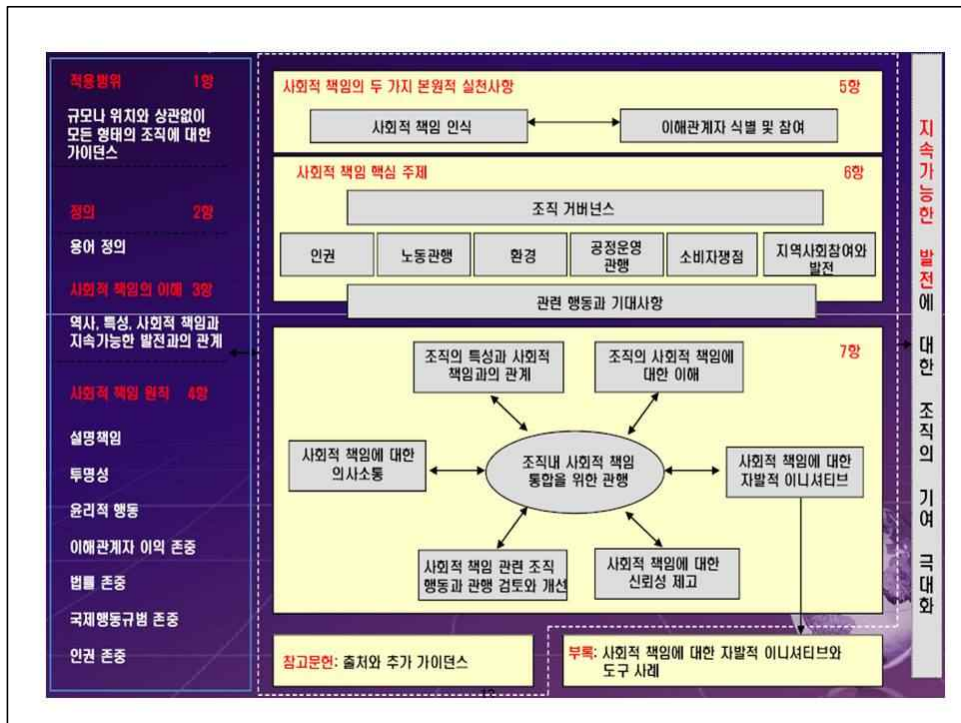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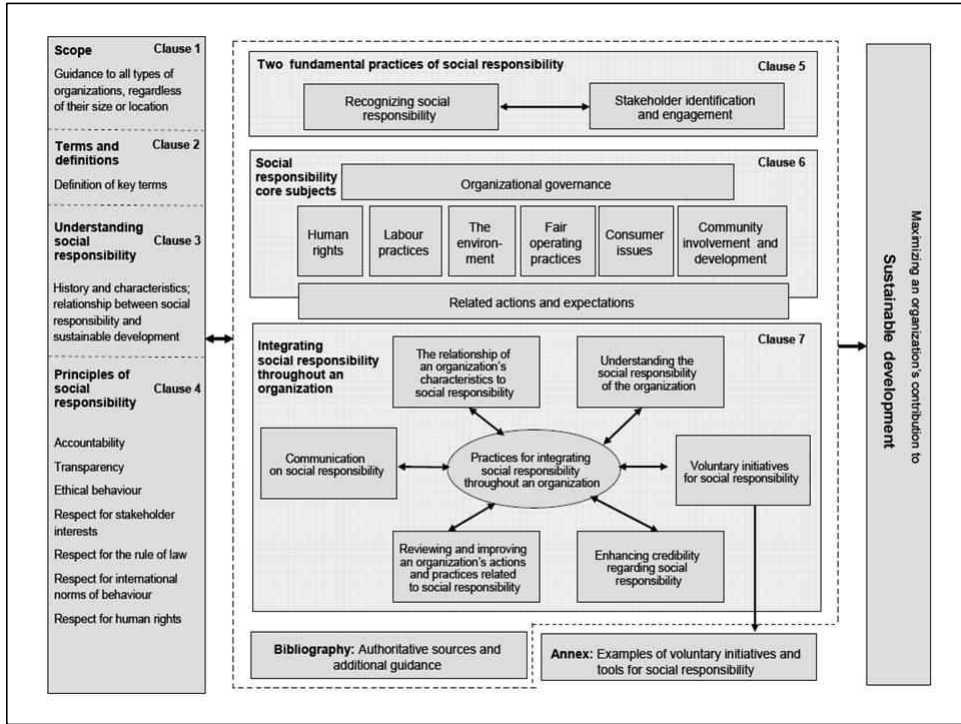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Lignes directrices relatives à la responsabilité sociétale

ICS 03.100.01

ISO26000 DIS / FDIS 비교

1	Scope	1	Scope
2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ed terms	2	Terms and definitions
2.1	Terms and definitions		
2.2	Abbreviated terms		
3	Understanding social responsibility	3	Understanding social responsibility
3.1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Historical background	3.1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Historical background
3.2	Recent trends in social responsibility	3.2	Recent trends in social responsibility
3.3	Characteristics of social responsibility	3.3	Characteristics of social responsibility
3.4	The state and social responsibility	3.4	The state and social responsibility
4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4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4.1	General	4.1	General
4.2	Accountability	4.2	Accountability
4.3	Transparency	4.3	Transparency
4.4	Ethical behaviour	4.4	Ethical behaviour
4.5	Respect for stakeholder interests	4.5	Respect for stakeholder interests
4.6	Respect for the rule of law	4.6	Respect for the rule of law
4.7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4.7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4.8	Respect for human rights	4.8	Respect for human rights
5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ngaging stakeholders	5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ngaging stakeholders
5.1	General	5.1	General
5.2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5.2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5.3	Stakeholder identification and engagement	5.3	Stakeholder identification and engagement
6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core subjects	6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core subjects
6.1	General	6.1	General
6.2	Organizational governance	6.2	Organizational governance
6.3	Human rights	6.3	Human rights
6.4	Labour practices	6.4	Labour practices
6.5	The environment	6.5	The environment
6.6	Fair operating practices	6.6	Fair operating practices
6.7	Consumer issues	6.7	Consumer issues
6.8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6.8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7	Guidance on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out an organization	7	Guidance on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out an organ
7.1	General	7.1	General
7.2	The relationship of an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to social responsibility	7.2	The relationship of an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to social resp
7.3	Understan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7.3	Understan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7.4	Practices for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out an organization	7.4	Practices for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out an organ
7.5	Communica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7.5	Communica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7.6	Enhancing credibility regarding social responsibility	7.6	Enhancing credibility regarding social responsibility
7.7	Reviewing and improving an organization's ac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social	7.7	Reviewing and improving an organization's actions and practices
7.8	Voluntary initiatives for social responsibility	7.8	Voluntary initiatives for social responsibility



7대 주제별 이슈별 기대사항(expectations) 현황

6.1	일반	
6.2	핵심주제1 조직차별구조	10
6.3	핵심주제2 인권	37
6.3.3	항목 1: 실사	4
6.3.4	항목 2: 인권위험상황	1
6.3.5	항목 3: 공의회피	4
6.3.6	항목 4: 고용차별	7
6.3.7	항목 5: 차별 및 억압집단	7
6.3.8	항목 6: 시민권 및 정치권	5
6.3.9	항목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5
6.3.10	항목 8: 직장에서의 기본권	4
6.4	핵심주제3 노동관계	44
6.4.3	항목 1: 고용 및 고용관계	10
6.4.4	항목 2: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12
6.4.5	항목 3: 사회적 대화	6
6.4.6	항목 4: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12
6.4.7	항목 5: 인적개발 및 직장 내 교육	4
6.5	핵심주제4 환경	33
6.5.3	항목 1: 오염방지	6
6.5.4	항목 2: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7
6.5.5	항목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9
6.5.6	항목 4: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11
6.6	핵심주제5 공급망관리	30
6.6.3	항목 1: 부패방지	9
6.6.4	항목 2: 책임있는 정치참여	5
6.6.5	항목 3: 공급망경쟁	5
6.6.6	항목 4: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6
6.6.7	항목 5: 재산권 존중	5
6.7	핵심주제6 소비자 책임	49
6.7.3	항목 1: 공칭 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8
6.7.4	항목 2: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9
6.7.5	항목 3: 지속가능한 소비	7
6.7.6	항목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분쟁해결	7
6.7.7	항목 5: 소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8
6.7.8	항목 6: 불우 서비스에 대한 접근	6
6.7.9	항목 7: 교육과 인식	10
6.8	핵심주제7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42
6.8.3	항목 1: 지역사회 참여	5
6.8.4	항목 2: 교육 및 문화	7
6.8.5	항목 3: 고용개발 및 기술개발	7
6.8.6	항목 4: 기술개발	4
6.8.7	항목 5: 복원 소득 창출	11
6.8.8	항목 6: 보건	4
6.8.9	항목 7: 사회적 투자	4

ISO26000		GIN 가이드라인	
핵심주제	이슈	영역 / 분야	
1	조직차별구조	지배구조(프로필)	
2	인권	이슈 1: 실사	인권(HR)성과지표
		이슈 2: 인권 위험 상황	
		이슈 3: 공의회 피	
		이슈 4: 고용 차별	
		이슈 5: 차별과 억압집단	
		이슈 6: 시민권과 정치권	
		이슈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슈 8: 직장에서의 기본권	
3	노동	이슈 1: 고용과 고용관계	노동(LA)
		이슈 2: 고용조건과 사회보장	
		이슈 3: 사회적 대화	
		이슈 4: 직장에서의 보건안전	
		이슈 5: 인적개발과 직장내 훈련	
4	환경	이슈 1: 오염방지	환경(EN)성과
		이슈 2: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이슈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슈 4: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원	
5	공공윤리경영	이슈 1: 부패방지	경제(EC)성과
		이슈 2: 책임 있는 정치참여	
		이슈 3: 공급망경쟁	
		이슈 4: 영향권 내 사회적 책임 제고	
		이슈 5: 재산권 존중	
6	소비자	이슈 1: 공칭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제품책임(PR)성과
		이슈 2: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이슈 3: 지속가능한 소비	
		이슈 4: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이슈 5: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6: 불우 서비스 접근	
		이슈 7: 교육과 인식	
7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이슈 1: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SO)성과지표
		이슈 2: 교육과 문화	
		이슈 3: 고용 개발과 능력 개발	
		이슈 4: 기술 개발	
		이슈 5: 재산과 소득 창출	
		이슈 6: 보건	
		이슈 7: 사회적 투자	

ISO26000 어떻게 만들어졌나 ?

- 2001년에 처음 제안되어, 2005년 1차 총회를 거쳐 2010년 8차 총회(덴마크,코펜하겐)를 거쳐 70여개 국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침
- 주무부서는 각 국가의 표준화 기관임.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 각 국가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 정부, 기업, 노조, 소비자, NGO, 기타그룹 등
- 2010년 11~12월경 IS 규격이 발행되면, 이를 우리나라 규격으로 발간하여 시행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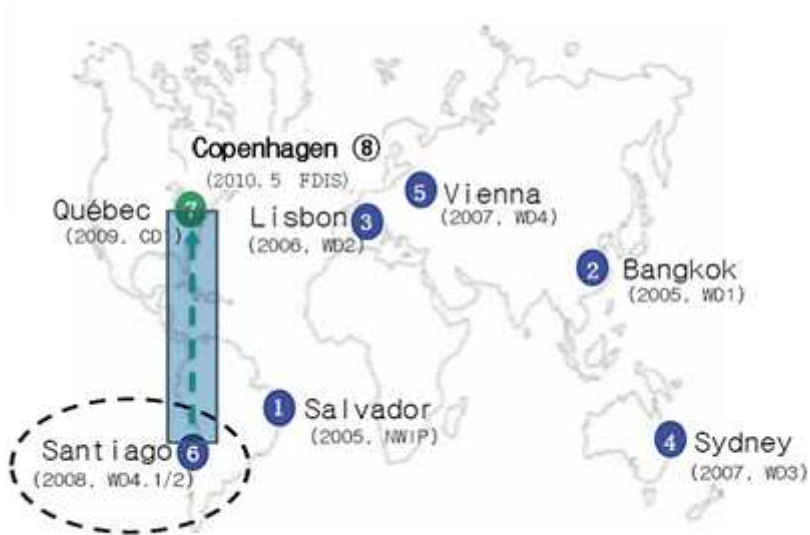
When and how did ISO/SR standard development continued

April 2001	ISO Council requests 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OPOLCO) to deliberate on the development of CSR standard
May 2001	ISO/COPOLCO Plenary – CSR Feasibility Study
June 2002	ISO/COPOLCO workshop,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pt. 2002	ISO Council adopts COPOLCO Report and establishes Strategic Advisory Group (SAG) on Social Responsibility
April 2004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from SAG to 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June 2004	Stockholm Conference & pre-Confer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June 2004	ISO TMB decision to proceed with development of ISO SR Guidance Standard
Sept. 2004	ISO TMB assigns leadership responsibilities to ISO member bodies SIS (Sweden) & ABNT (Brazil) – (Twinning)
Oct. 2004	New Work Item Proposal (NP) circulated among ISO M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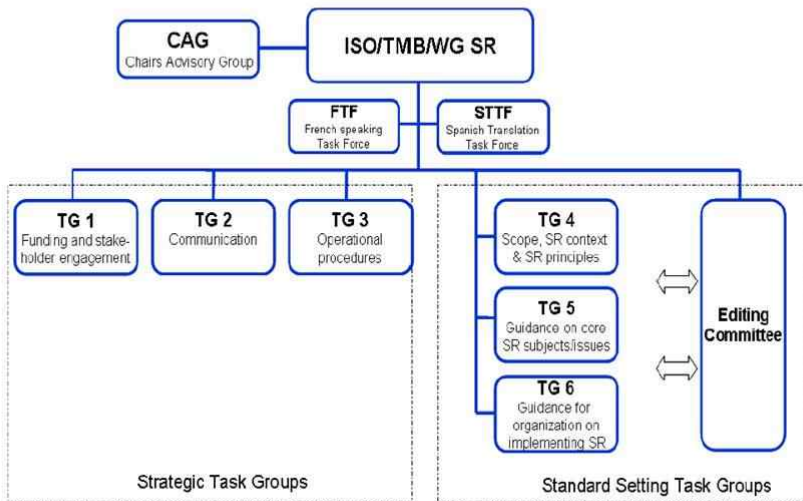
When and how did ISO/SR standard development continued – cont'd

Jan. 2005	Votes : Yes - 29; No – 4 On starting the development of a ISO standard (guidance) for SR
Mar. 2005	ISO conclud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Mar. 2005	1 st Plenary Meeting, Salvador, Brazil
Sept. 2005	2 nd Plenary Meeting, Bangkok, Thailand
May 2006	3 rd Plenary Meeting, Lisbon, Portugal
Dec 2006	ISO conclud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UN Global Compact
Jan. 2007	4 th Plenary Meeting, Sydney, Australia
Nov. 2007	5 th Plenary Meeting, Vienna, Austria
June 2008	ISO conclud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OECD
Sept. 2008	6 th Plenary Meeting, Santiago, Chile
May 2009	7 th Plenary Meeting, Quebec, Canada
May 2010	8 th plenary meeting, Copenhagen, Denmark

대륙 별 ISO26000 총회 개최지 현황



ISO 26000 (SR) 추진 체계도



ISO26000(SR) WG 의장단

ISO/TMB/WG on Social Responsibility



Chair : Jorge E.R. Cajazeira (Brazil)



Vice-Chair : Staffan Söderberg (Sweden)



Secretary : Kristina Sandberg (Sweden)



Co-Secretary : Eduardo Campos de São Thiago (Brazil)

호주, 시드니 제4차 총회 (2007.1) 모습



ISO/SR WG Memb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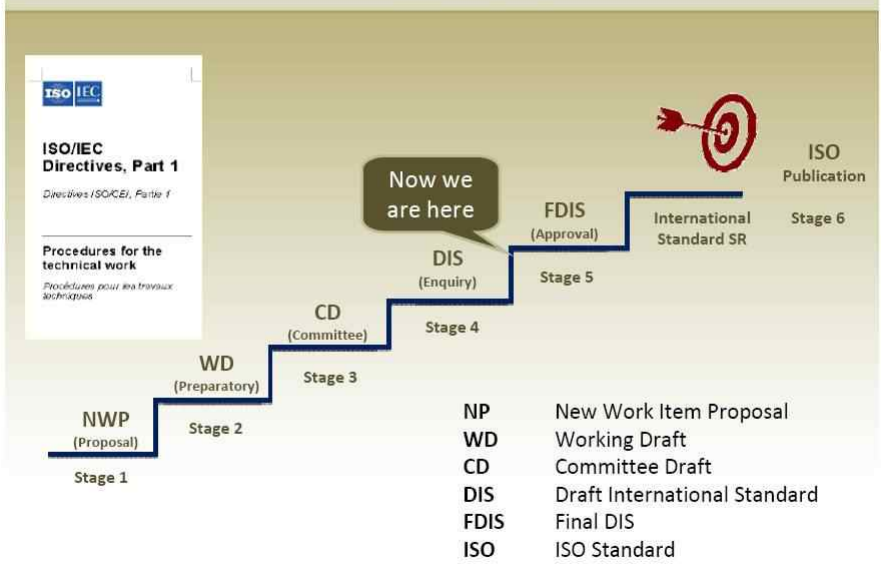
Argentina (IRAM) Armenia (SARM) Australia (SA) Austria (ON) Azerbaijan (AZSTAND) Bahrain (BSMD) Bangladesh (BSTI) Barbados (BNSI) Belarus (BELST) Belgium (NBN) Brazil (ABNT) Bulgaria (BDS) Canada (SCC) Chile (INN) China (SAC) Colombia (ICONTEC) Costa Rica (INTECO) Côte d'Ivoire (CODINORM) Cuba (NC) Czech Republic (CNI) Denmark (DS) Ecuador (INEN)	Egypt (EOS) Fiji (FTSOCCO) Finland (SFS) France (AFNOR) Germany (DIN) Ghana (GSB) Greece (ELOT) India (BIS) Indonesia (BSN) Iran (ISIRI) Ireland (NSAI) Israel (SII) Italy (UNI) Jamaica (JBS) Japan (JISC) Jordan (JISM) Kenya (KEBS) Kazakhstan (KAZMEMST) Korea republic of (KATS) Lebanon (LIBNOR) Libya (LNCMSM) Malaysia (DSM) Mauritius (MSB)	Mexico (DGN) Morocco/Maroc (SNIMA) Netherlands (NEN) Nigeria (SON) Norway (SN) Oman (DGSM) Panama (COPANIT) Peru (INDECOPI) Philippines (BPS) Poland (PKN) Portugal (IPQ) Qatar (QS) Romania (ASRO) Russian Federation (GOST R) Saint Lucia (SLBS) Saudi Arabia (SASO) Serbia (ISS) Singapore (SPRING SG) South Africa (SABS)
---	--	---

Spain (AENOR) Sweden (SIS) Switzerland (SNV) Syria (SASMO) Thailand (TISI) Trinidad and Tobago (TTBS) Turkey (TSE) Ukraine (DSSU) United Arab Emirates (ESMA) United Kingdom (BSI) Uruguay (UNIT) USA (ANSI) Venezuela (FONDONORMA) Vietnam (TCVN) Zimbabwe (SAZ)	<p>ISO</p> <p>member bodies</p> <p>with</p> <p>nominated experts</p> <p>to the working group</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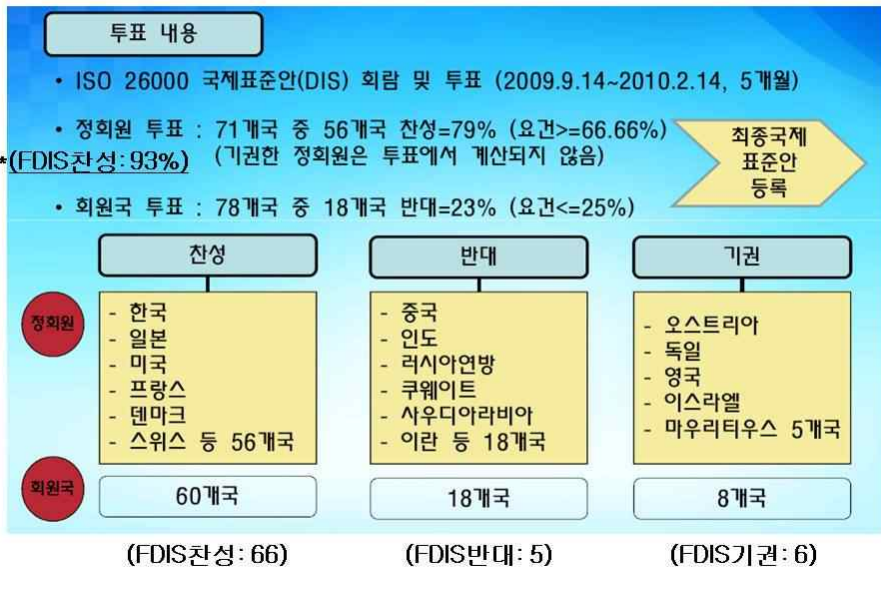
ISO 표준의 개발 과정



Standards writing process



최근의 각 국가별 ISO26000(DIS/FDIS) 투표 현황



ISO26000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ISO26000을 학교에 적용한 사례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

핵심 주제	주요 내용 요약	학교에의 적용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과정, 구조, 권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습자, 부모의 참여 개방적, 평등한 의사결정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및 취약성 고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학력자, 문화다양성의 가치 존중
노동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관계,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 직장보건안전,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직원의 존중 안전한 학교의 실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적응, 환경보호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적 교실과 교정
공정운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공정경쟁 및 재산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운영관리 공정성, 청렴성
소비자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정보 및 계약, 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투명성과 학습자 권리 보호
공동체 사회,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참여, 고용창출과 기술개발 부, 책임있는 투자, 교육, 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위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진단 사례 분석

선교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방송일시: 2004년 10월 2일 (토) KBS 1TV 60분

1. 한국교회, 위기의 징후들

국민의 1/4이 개신교도며 세계 2위의 선교대국.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 5개가 한국교회. 국회의원 255명 중 120명이 개신교 신자며 상장기업 임원의 43%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신도들 간에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세습을 둘러싼 논란, 재정 운영의 문제,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 등이다.

2.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자화상

- 한국교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59.3%

취재진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 한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있다(31.1%),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있다.59.3%), 무응답(9.7%)

▶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

- 기독교(42.7%), 불교(31.9%), 천주교(11.3%), 무응답(12.1%)

▶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

- 이웃돕기/ 봉사활동(47.3%),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제공(14.9%), 지역공동체형성(12.4%), 인권/ 복지활동(8.9%), 남북교류활동(4.5%), 무응답(12.0%)

▶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 자기교파/자기교회중심(40.3%), 교회의 대형화/ 성장제일주의(23.9%),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비민주적 의사결정/ 불투명한 재정운영(9.5%), 세습(5.8%)

▶ 한국교회의 정치적 성향

- 보수적이다(47.6%), 중립적이다(22.2%), 진보적이다(18.1), 무응답(12.2%)

▶ 일제시대 한국교회의 친일부역,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나 청산의 필요성

- 필요하다(53.1%), 필요하지 않다(39.8%), 무응답(7.2%)

3. 영육의 역사를 걸어온 한국교회

지난 120년 한국교회는 영광과 치욕의 두 길을 걸어왔다.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교회는 근대화와 민주화, 사회복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또한 신사참배, 친일, 독재권력과의 유착 등의 부끄러운 길을 걷기도 했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참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 목사직 세습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

취재진이 찾아가간 강남의 교회. 이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입구가 나뉜다. 교회 내분으로 1층 예배를 보는 신도와 2층 예배를 보는 신도가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교회 분열의 원인은 담임목사의 목사직 세습. 신도들은 후임 목사의 자질이 부족해 재신임을 요구하지만, 담임 목사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재신임을 거부한다. 전문가들은 세습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5. 불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아

상당수 교회의 목사는 교회 재정 운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한 대형교회의 목사는 교회 돈 31억을 개인의 선거자금, 불륜 합의금, 개인용도 건물 건축 등에 유용한 혐의가 인 정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대형교회 목사는 교회재산을 담보로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도 했고 이후에는 교회를 근거당 설정해서 수 십억을 대출 받아 아들 명의의 회사에 지원했다.

교회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제도화시키는 교회도 나오고 있다. 민주적 정관을 만들고 교회재정 상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한다.

< ISO26000 기대사항(Expectations) 요약 >

1. 조직지배구조

1.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2. 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4.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여성,소수자등)의 공평한 대우 촉진한다.
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일치 불일치 범위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7. 조직의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직원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8.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한다.

2. 인권

1. 조직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인권존중을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
4. 조직의 보안체계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규범 및 법 집행을 위한 표준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5.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 메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
6. 치유 메커니즘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7. 조직은 취약그룹(여성,장애인,아동,원주민등)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8. 조직은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개인의 삶, 의사표현자유, 집회결사자유 등)를 존중해야 한다.
9. 조직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노동

1.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 조직은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한다.
3. 조직은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을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법에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노사정 대화 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직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1. 조직은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의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수자원을 보전하고, 각종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조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조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공정한 운영 관행

1. 조직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조직은 각종 계약, 투자, 금전 거래,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4.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공급망(Supply Chain)에 걸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을 시행한다.

6.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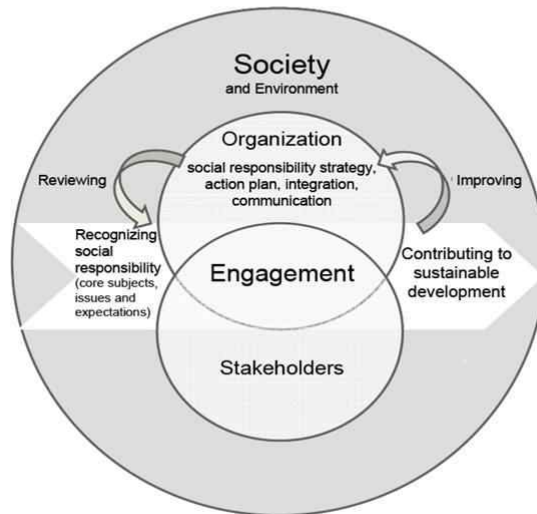
1. 조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
2. 조직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강요하지 않는다.
4. 조직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대응하는 실행 방안을 개선한다.
7.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8.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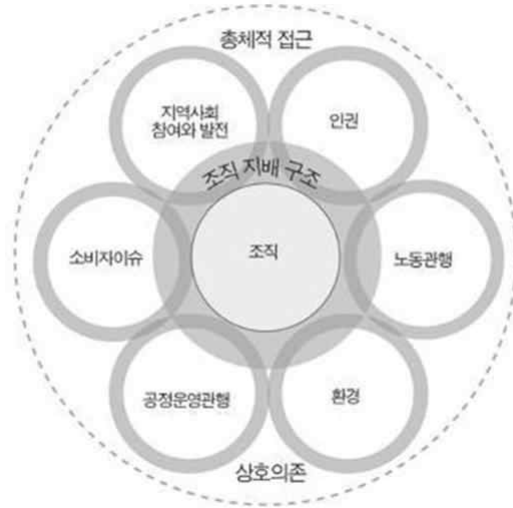
1. 조직은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달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부와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조직이 속한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참여(Engagement)를 통한 사회책임의 통합 방안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7개 핵심 주제 및 상호관계



ISO26000과 교회조직 : 거버넌스와 공정운영관행

황호찬 | 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 기독교경영연구원 CSR센터장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I. 들어가며

교회는 매우 독특한 조직이다. 일반 정부조직과도 다르며, 비영리조직이지만 여타 비영리기관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특히 ISO 26000의 근간이 된 기업조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설립목적에서부터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교회는 교인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에 그 주요 목적을 둘 수 있겠으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적정 이익의 달성에 그 목적을 둔다. 조직의 운영주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됨에 비해, 교회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결정의 절차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투명성의 목적, 공정운영이라는 개념도 상호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적인 조직 전반을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는 ISO 26000이 교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취지의 이해에서부터 적용의 범위, 용어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ISO 26000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동 규정이 기업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교회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교회 역시 사람과 자원이 모여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ISO 26000의 거버넌스와 공정운영관행의 이해 및 교회에의 적용

가. Governance

ISO 26000의 내용 중 제4항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제6항은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원칙으로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존중, 법률 존중, 국제행동규범의 존중, 인권 존중 등 조직이 대 사회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6항은 위 각각의 원칙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즉 사회적 책임 원칙들이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등의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6.2항은 조직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실행이 적용 가능하도록 절차와 체계 그리고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ISO 26000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현 교회 조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SO>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교회> 기독교의 경우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교단마다 교유의 의사결정 기구 및 절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에 일률적으로 적용점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었던 의사결정이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의 책임 하에 수행된 의사결정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조직인 교회는 의사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특히 외부 감시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타당성이 검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의사결정 절차나 투명성을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교회의 이러한 설명책임의 결여 및 비투명성의 관행은 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의 도입(예, 외부감사제도의 실시 등), 교회 구성원의 중요성 인식 제고, 교단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적극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ISO 2>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교회의 이해관계자들은 일차적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인 교인, 사역자 및 직원을 포함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사회,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포함될 것이다. <ISO>규정

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설이나 세금에 관해서는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회에 부여된 특권(혹은 배려)이 종교의 이름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SO> 사회적 책임의 실행과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회> 교회는 통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금을 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다 하여 특별한 경제적 보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경제적 보상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환경보호, 인권신장 등)한 교인을 후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의 소식란 등을 통해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ISO>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회> 교회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과 같이 예금 혹은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 비록 투자회사와 같이 금융자원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외국 교회의 경우 위탁된 금융자산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펀드에 운영하는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한편, 교회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키워내는 조직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일은 물론,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선발하고 필요한 사역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섬기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직책을 위임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O>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여성, 소수자 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한다.

<교회> 교회의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요소는 소외층에 대한 배려다. 비록 교단 별 교리에 의한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화 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내에서 여성 혹은 소외층에 대한 차별 대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ISO>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일치 불일치 범위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교회> 이러한 ISO 규정은 일반 조직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적용된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의견의 일치 혹은 의견의 불일치의 경우를 막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ISO>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한다.

<교회> 교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당회 등 의사결정기구에는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적 기구가 아니라 교인 전체를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며 섬기는 기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청지기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정관과 이에 의거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각 사안마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공정운영관행

ISO 26000의 제6.6항은 조직의 공정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 조직이던지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입안되어 있으나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SO> 조직은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교회> 이 조항은 선진사회의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의 어떤 조직이던 해당되는 것이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 교회의 역사와 현실을 볼 때 교회 역시 부패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감사기능은 형식적이다. 그러나 감사는 전체 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독립된 기구이어야 하며 그 권한이 확보되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제도가 입안되어 교회재정의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ISO>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교회> 정치활동을 하는 교회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교회 조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내의 정치적 활동, 로비 등은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교단 총회장 등 임원 선출에서의 금권선거, 교단 내의 정치활동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요인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SO> 조직은 각종 계약, 투자, 금전 거래, 협력 업체 선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교회>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감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유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각종 거래에서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일반 사회의 여타 조직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공사를 진행하거나 각종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공개 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여건 상 각종 거래는 교회의 명의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명의로 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투명하게 하여 사후에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ISO>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이단의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다만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한다면 일부 대형 교회가 인적 혹은 물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는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산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인의 수평적 이동, 혹은 교인 빼앗기 등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SO>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교회> 자발적 조직인 교회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교회가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재산뿐이 아니라 교회와의 다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서비스 혹은 제품의 품질이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II. 나가며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그 존재의 목적에서부터 실행의 전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ISO 26000이 교회에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 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큰 틀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ISO 26000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예를 들어 투명성, 인권존중 등)은 교회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의 이슈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달라지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교회는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세상의 압력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교회는 사회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SO26000의 한국교회의 적용

: 인권과 노동관행의 측면에서

김종철 |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1.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사회적 책임 개념의 발달 과정

전통적으로 인권에 대한 잠재적 침해자는 국가였기 때문에 근대적인 의미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국가의 국내총생산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 못지않게 인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1차적인 인권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통제를 하였지만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다국적 기업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과 그 규범을 이행하는 절차의 확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과 절차의 확립이 어렵게 되자¹⁾ 인권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로서의 성격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경영내부에서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덴마크 신속점검), 제3자가 개입되어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인증하여 주는 인증지표(SA8000),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 지표(프랑스 Bilan Social, 흔히 G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영국 EIRIS) 등이 있었다.

1) UN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마련했으나 많은 정부대표들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조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자, UN인권위원회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존 러기'를 임명하여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존 러기는 기업의 법적인 인권책임 보다는 자발적인 준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은 기업에 적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어서 다른 조직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2010년 품질경영에 대한 ISO9000이나 환경경영에 대한 ISO14000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만들었는데, ISO26000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 잠재적인 인권침해자인 교회의 인권 존중 의무

오늘날 비국가적행위자이지만 기업과 더불어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로서의 교회(종교)가 자발적으로 인권 존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ISO26000의 가이드라인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교회에게 인권보호 존중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²⁾.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강제성 있는 국제법규범은 아니지만 그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라고 하여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가 단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 및 교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는 국제법규범으로 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ISO26000을 교회에 적용한다고 할 때 인권(노동관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교회에서 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우선 교회가 지금까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무관심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라는 특수한 조직의 경우 일반적인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ISO26000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는 것

2) 기업이 잠재적 인권 침해자 이므로 이를 규제하되 법적으로 인권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논의이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고,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어원인 oikonomi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돌보는 것이다(하우즈 바르트)라고 보고 그러한 원래의 기업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보다는 한국상황과 교회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지 지표가 나와야 한다.

아래에서는 ISO26000을 적용할 때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특별히 유의미한 부분을 지적하고, 교회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한 다음, 한국교회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3. ISO26000을 교회에 적용할 때 특별이 유의미한 부분

가. 인권과 관련해서

ISO26000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인권과 관련한 이슈(쟁점)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t), 인권에 위협한 상황, 공범회피,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 집단,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이 있는데, 교회에 적용하여 쟁점별로 교회가 행하도록 기대하는 바와 그것을 준수하는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몇 가지 예상지표 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회는 인권이 존중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인권 존중이란 조직이 조직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 안 되며,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해야 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3가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교인 뿐 아니라 목회자들을 포함한 직원, 지역사회, 교회가 사용하는 용역업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복지시설 등이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이 되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되지 않고, 증진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목회자의 교인들에 대한 성추행과 같이 교회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회 부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 시설과 같이)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자들이어서 이들이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선교라든지 수련회와 같은 것도 위험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리더들과 직원들은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규범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면, 자신의 영향력 내의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영역을 규명하고, 인권이 존중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성희롱 예방교육).

공범회피의 쟁점과 관련해서 교회는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공범 책임은 타인의 인권 침해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직접공범), 타인의 인권 침해가 교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수혜적 공범), 특정 대상과의 관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교회가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임할 때 발생하게 된다(묵인하는 공범). 따라서 교회는 이 3가지 공범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해야 한다. 교회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급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받는 경우에 수혜적인 공범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교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목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묵인하는 공범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교회는 자신에게 공범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도 있다.

고충처리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차별 및 취약집단의 쟁점과 관련해서 교회는 인종, 피부색, 결혼 여부, 언어, 재산, 국적, 인종, 사회적 출신, 경제적 기반, 장애, 성적취향,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주민, 장애인, 아동, 여성과 같은) 취약그룹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교회 리더들의 인적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얼마나 많은 여성 리더가 있는가), 교회의 인적구성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취약 그룹들이 얼마나 있는지, 취약 그룹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교회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지, 교회의 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율이 취약그룹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양성평등에 입각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회자들의 승진과 임금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있는지 여부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쟁점과 관련해서, 교회는 재산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교회 정치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권리, 건강의 권리, 의료의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교회 내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지, 당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교회 내부에 부당하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지,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헌금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있는지,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을 위해 얼마나 교회 건물 등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교회의 부설 학교 등에서 종교를 강요하는지 등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기본권이란 쟁점과 관련해서 교회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하여야 한다. 한국 상황에서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고, 담임목사에게 낙인찍힌 경우에는 같은 노회의 다른 교회에서도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의 직장에서의 기본권이 특별히 중요하다. 교회에서 목사 내지 직원들의 노조가 있고 이들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은 아래에서 다룰 노동관행이라는 쟁점과 중복된다.

나. 노동관행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핵심주제인 노동관행과 관련된 이슈(쟁점)에는 고용 및 고용관계,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적개발과 훈련 등이 있는데 교회에 적용하여 쟁점별로 교회가 행하도록 기대하는 바와 그것을 준수하는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몇 가지 예상지표 들은 다음과 같다.

남자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얼마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비정규직과 같은 일시적이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에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그 직원에 대한 노동관행을 알고 있는지, 그 용역업체의 부당한 노동관행으로 교회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용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협박, 훈육, 부당한 조치, 퇴사 권유하고 있지 않은지, 직원의 삶의 질을 고려한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보장되는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시간외 노동은 최소화하며 자발적으로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ILO협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지, 위험한 업무를 담당할 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지, 직원들이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교회에서 직원들의 교육비(목회자 자녀의 유학비가 아니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ISO26000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ISO26000이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ISO26000은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ISO26000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권이 어떤 인권이고 누가 만든 인권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대법원에서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대학교 종교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인들만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기독교 대학교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몇 년 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차별적인 설교 등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실제로 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혐오범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사회의 주류는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우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교회가 ISO26000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다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신학적인 입장과 신앙공동체로서의 특수성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교회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표 개발에 대한 제안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ISO26000이 한국교회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한국 상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ISO26000의 적용 논의가 교회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적합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신학적인 함의가 탐구되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국제·국내인권 규범과 관련 국내외유관지표 내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인권과 관련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긍정적 사례 뿐 아니라 부정적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 상황에 적실성 있는 지표 내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 : 지역사회와 환경

조성돈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지역사회와 환경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가까우면서도 생소한 주제이다. 교회 자체가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동시에 환경의 문제도 그간 교회에서 자주 다루어지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직접 그에 맞는 행동을 했던가하고 묻는다면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와 환경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ISO26000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비평, 그리고 가능한 제안들을 내놓아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은 지역사회라는 입장에서, 또 지역교회의 단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한다.

1.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그리고 교회

1) 왜 지역사회인가?

ISO는 지역사회를 '일반적으로 조직의 위치와 물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조직의 영향을 받는, 거주지 혹은 정착촌이 위치한 지정학적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것은 철학에 의한 것이거나 광범위한 의미보다는 현실적으로 조직이 속해있고, 위치해 있는 한 지역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사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정학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조직은 바로 이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써 중요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라는 인식에서 참여하게 된다. 이 조직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속하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역교회가 과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이 생긴다.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일 것이다. 먼저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한 조직일 수 있을까하는 것이고, 과연 교회는 이러한 과정(Process)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일까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해 왔다. 특히 종교개혁은 교회를 지배계급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회로 바꾸어 놓았다. 두 왕국론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 수단의 두 방법으로 보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관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교회는 그간의 국가와의 싸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국가와 함께 서게 되었다.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71)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주들과 함께 각 개인들을 일깨워서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일을 함께 했다. 교리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 세우고, 동시에 학교교육을 통하여서 시민의 자질을 만들어간 것이다. 교회는 지역의 빈민구제와 마을 사람들의 윤리적 훈계를 위해서 지역정부와 함께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항상 지역의 중심이었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54f)

2)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이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은 교회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 한국교회에서도 신의 주 제일교회, 제이교회 하듯이 지역명을 가진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간 비록 소수였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고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기를 원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깨어졌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서나 생활문화가 먼저 깨어진 것이다. 이제 지역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직장이 떠나가고 문화조차도 지역을 떠나 있다. 이러다 보니 교회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교인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교회의 비전에 동의해 모인 공동체이다. 그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문제는 지역을 떠난 교회는 지역에 관심을 없다는 것이다. ISO 문건에서 말하고 있듯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다 보니 지역에서도 교회를 이질적 집단으로 항상 새롭게 교회 건물을 세워가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각 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존의 차원으로 보게 되었다. 각 교회들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음식배달 봉사를 하거나 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크고 작은 교회에서 교회 내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교회들이 행하는 봉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교회가 소통하고 있다. 많은 지역민들이 교회의 이러한 시설이나 봉사의 혜택을 입으므로 교회를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하고 이웃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봉사가 교회가 지역을 위해 행하는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전도를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을 공동체화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한 조직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봉사를 한다면 그냥 교회가 알아서 재정을 마련하고, 교인들로 봉사하게 하고, 그 반찬통위에 전도지 없어서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교회가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을 찾는 것,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나누어주는 봉사에서 지역민들이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등을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자원봉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봉사에 참여하고 기부하는 것에도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것이다. 교회가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주축을 이루지만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지역을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3) 가능한 모델들

이미 언급했듯이 교회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것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하는 일이다. 즉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사역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자발적 조직이 이루어야할 부분들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먼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의 '보물찾기'(더

붙어 사는 지역공동체 40.)라고 불리는 자원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통의 지역들은 나름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지하자원과 같은 물질적 자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중심되는 전통의 역사나 자랑거리, 기후나 자연경관과 같은 풍토적 가치와 역사 사건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역사적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사, 축제와 같은 행위적 가치 등이 이러한 보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전문적 지식,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를 탐구한다면 그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자료를 추적하고 축적해 낼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다. 향토역사가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들은 굳이 학자가 아니어도 지역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 의해서 꾸려지기도 한다. 전에 만났던 분은 학교 국사선생님이셨는데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책을 내고, 역사적 유적에 대한 건의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내고 계셨다. 이러한 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조차 잊혀졌던 역사를 발굴하고 문화유산을 새롭게 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유산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학생들에게도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관광자원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러한 역사연구팀이나 지역조사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먼저 시작하고 그 문호를 열어서 지역의 동호회 형태로까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활동이다. 교회는 보통 경제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교회를 영적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생산주체가 아닐 뿐이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소비주체이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날 모여서, 또는 주중에 지속적으로 모여서 소비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분명 대단한 소비주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소비에 대해서 의식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는 지역상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요즘 거대 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형태가 생겨나면서 지역의 작은 상점들이 상당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입장에서 교회가 의식적으로 지역상점들을 이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의식이 있는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농촌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어도 이를 소비해줄 대상을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위 말하는 유기농인데, 이 유기농산물이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좀 비싼 것이 사실이다. 적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유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도시교회와 연관하여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매 주일 식사를 하는 교회가 먼저 유기농산물을 사용해 주는 것이다. 물론 가격이 비싸겠지만 의식 있는 소비라는 입

장에서 서로를 세우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생협운동을 펼쳐나갈 수도 있다. 현재 초보적 단계인 생협운동이 교회라는 지역조직과 만날 수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

1) 우리에게 환경은?

ISO 문건은 현재 환경의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인간 활동은 역사상 그 어떤 기간보다 더욱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변화시켜 왔다.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과 서식지가 상당한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규모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광활한 땅은 도시와 농촌 모두 인간 행위로 인해 변모하였다.'

환경의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왜 환경인가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공감되는 사항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가이다.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의 질문일 것이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신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고 본다. 이미 세계교회는 1970년대부터 환경의 문제를 신학과 교회의 핵심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의미를 공유해왔다. (2010 교회가 사회적 책임 2.0 백서 11) 특히 환경을 인간의 도구나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께 지어진 피조물(Mitwelt)로서 보는 이해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글로벌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행동은 지역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하지만 그 영향이나 범위는 결국 글로벌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것은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자그마한 일이지만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열대우림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한다.

또한 환경문제는 행동과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야한다.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단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사유일 뿐이다. 동시에 환경을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의 실행이다.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제도와 이득이 있기에 첫 시작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지면서 분리수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즉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행동(action)과 숙고(reflection)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 비평, 내지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critic의 단계가 함께 간다면 좀 더 사회발전에, 그리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질 때 문제의 인식과 해결이 같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한국교회와 환경

이미 사회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 왔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사회의 그러한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학적인 논의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미흡한 수준이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수 많은 일회용 컵과 용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매 주일 주보로 사용되는 용지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기윤실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에서 한 참여자는 교회의 참석 자체도 환경적 관점에서 제고해 보아야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먼 거리에서 교회를 참석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교회를 가까운 곳을 다니지 않고 자가용을 타거나 교회의 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다니는데 이들이 주일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는 이와 같이 의식의 문제가 큰 데 아직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3) 가능한 모델들

가장 먼저 실행 가능한 것은 자체적 평가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회용품 사용, 일회용 커피나 차(tea) 사용, 다양한 복사용지나 일반적인 용지들의 사용 등이 들 수 있고, 냉, 난방이나 전기사용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것 등 실제적인 면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점검 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치활동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도 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건물외부에서 한 눈에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들

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기 사용 등을 통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환경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먼저 손쉽게 교회 주변을 아스팔트로 뒤덮지 말고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화단을 만들고 땅을 드러내 놓는 일은 주변을 환경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또 교회의 옥상이나 천장에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난방과 온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보조가 나와서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익이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게 되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동시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교회가 갖고 있는 관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태양열 에너지 사용은 농촌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데 반해 도시지역에서는 아직 생소한 것이라 그 설치만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본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용지와 복사용지를 재생종이로 사용하는 것도 제안해 볼만하다. 30년 된 원목 한 그루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종이량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우 1만장이다. 매주 1만장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그루씩의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많은 종이를 재생용지로 사용한다면 벌써 매주 몇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주보에도 '이 주보는 환경중심의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요즘은 그린산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소비에 반응하기에 나온 결과일 것이다.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의 그린소비욕구를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

3. 나아가며

ISO26000이라는 기준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두 주제는 현재 한국교회에 던져진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전이며 동시에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지역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대면해 있는 현실이다. 단지 우리가 그 동안 그 지역을 교회와의 대척점으로 놓고 항상 대상으로, 때로는 악의 구역으로 규정하고 외면해 왔다. 이제 이 지역사회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다.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세우며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중요한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또 때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또한 환경은 의식과 행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적지 아니하게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들을 연결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바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두 주제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혼자서 행동이 아니라 더불어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교육의 기회를 열어 나누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장(Praxis)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과 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마련한 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과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통(不通)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부록

1. 2008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 발제문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 양용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엔씨스콤 대표)
2. ISO26000이란
3. 기윤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내역
4. 기타자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양용희 |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엔씨스콤 대표

Think Globally

1. 들어가는 글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표준화 작업으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UN Global Compact 그리고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ISO 26000)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의 확산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자 보고해 온 환경, 윤리, 사회공헌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과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가 증가하고 시민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업은 생산, 판매, 고용, 납세 등 기업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환경, 인권,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다원화 사회에서 기업은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책임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사이에 기업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기업들의 환경, 인권, 윤리,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책임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커졌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도 기업과 같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

20세기 후반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확산으로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와 시장의 지배력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NGO들의 비판과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조직, 기업, 기업인들의 힘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¹⁾ 한편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확장가운데 발생하는 환경, 노동, 인권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 또한 증가하고 있다. Corporate Watch의 경우 기업의 생태학적 사회적 파괴에 대한 감시와 고발의 역할을 위해 탄생된 대표적인 NGO 가운데 하나이다.²⁾ 미국인들조차 기업이 그들의 생활전반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기업의 막강한 힘과 사용은 NGO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힘과 영향력은 곧 바로 기업의 책임성과 연계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모든 행위에서 윤리와 책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생산과 고용,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강조는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했다. 기업인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납세를 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 생각하였다. 기업 본래의 목적은 고용, 생산, 이윤 추구

1) Edwin M. Epstein은 기업의 힘과 사용에 대하여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업 조직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기업연합회(Corporate America)와 같은 조직에 의한 거시적 차원(macro level)의 힘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가격인상, 시장조정, 소비자 지배와 같은 매개차원(intermediate level)의 힘이다. 세 번째는 Microsoft, Wal-Mart, Procter & Gamble, Nike와 같은 개별 기업에 의한 미시적 차원(micro level)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Ted Turner, Michael Eisner(Disney), Bill Gates(Microsoft)와 같은 기업인에 의한 개별적 차원(individual level)의 힘의 사용이다. 그리고 이들 힘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별적, 기술적, 환경적, 정치적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Archie B. Carroll, Ann K. Buchholtz. 2003).

2) <http://www.corporatewatch.org>

3) Business Week, Sept 11, (2000)

에 충실하는 것인데 기업이 사회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로 기업은 실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기업의 경제활동 역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할 주요한 경영 지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환경, 노동,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외면하게 되면 결국 사회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성과를 가져준다는 긍정론적 시각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제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경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Price water house coopers가 1161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불과 25%만이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CEO들은 60%로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CEO들이 68%로 조사되어 CEO들에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영에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제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성과가 중요하며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고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해석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공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향상하고 기업가치과 올라가 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단순한 이타주의적 시각이 아닌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회사 내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관련 부서가 조직되고 GRI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UN의 글로벌컴팩에 가입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점차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다.

4) Pricewaterhousecoopers, 5th Annual Global CEO Survey, (2002)

3.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윤리,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기업의 업종, 규모에 따라 매우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법과 제도, 사회의 전통,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개념은 학자, 국제조직, 기업 들 마다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개념의 정의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기업이나 학계에서도 아직 공통된 정의가 없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⁵⁾ 'CSR'이라는 표현은 장소, 기업,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⁶⁾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 윤리, 인권, 지배구조, 사회공헌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폭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으나 "CSR"을 "기업사회공헌"으로 번역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Carroll(2003)교수가 잘 정립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경제적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법적책임(legal responsibility), 윤리적책임(ethical responsibility), 자선적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자선적행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책임과 법적책임, 윤리적책임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으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자선적책임은 기대되는 책임으로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다.⁷⁾

5) Dahlsrud Alexander, (2008)

6) Welford, (1996)

7) Carroll B. & Ann K. Buchholtz(2003), p.39

CSR에 대한 주요 정의

<p>Michael Hopkins</p>	<p>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란 사회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자세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책임의 광의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일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e of Age 중에서)</p>
<p>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p>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전체와 함께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다.</p>
<p>World Bank</p>	<p>CSR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크기는 사회전체를 위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p>
<p>UN</p>	<p>CSR은 기업경영의 주관심사와는 별도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기업의 행동들이 기업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시민과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p>IBLF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 Forum)</p>	<p>CSR은 종업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중요성에 기초한 기업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활동이다. 큰 의미에서 주주들에게와 같이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p>
<p>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p>	<p>CSR은 윤리적, 법적, 경제적, 시민의 기대를 부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다.</p>
<p>Pfizer</p>	<p>기업시민정신이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업이 지역사회와 지구촌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위한 노력이다. 좋은 기업시민이 된다는 것은 화이자의 정책과 경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는 화이자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나 그룹이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는 기업시민정신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이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미션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p>

CSR의 주요 용어

용어	개념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정신)	기업시민정신은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Simon Zadek)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시키려는 경영활동이다. (지속가능발전한국위원회)
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지속가능성)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PWC)
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라는 새로운 자본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에 이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 자본시장은 국제 정치사회보다 사회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데 펀드 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가치투자자와 함께 새로운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 사회책임투자협회(ASrIA)는 2004년 미국에선 15%, 유럽에선 12%, 일본에선 0.02%가 책임투자펀드였다고 보고 있다.
기타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Ethical Accounting, CSI (Corporate Social Investment)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흐름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인식을 높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에서부터 안전, 노동, 기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OECD와 최근에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UN의 글로벌컴팩,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책임을 표준화 작업은 표준화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의 대상은 환경, 노동, 윤리, 사회공헌, 사회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보고서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⁸⁾ 1999년에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유럽국가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를 2001년 발간하였다. 그린페이퍼의 주요 지표로는 기업내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작업장에서의 건강안전, 환경관리 등이 있으며 기업외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하청업체, 고객, 국제 환경 등이 있다.

GRI는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에 의해 1997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 독립하였다. 현재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공적인 공동연구 센터로써, UN의 지구협약(Global Compact)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는 기관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공적으로 알리는 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재무보고만으로는 전반적인 조직의 성과에 대한 주주들과 고객, 지역공동체, 다른 투자자들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있으므로 Sustainability Reporting을 통해,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후생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GRI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유형, 규모, 어떠한 입지의 조직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구협약(Global Compact)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진전시킴으로써 기업 책임을 촉진시키려는 United Nations initiative이다. Global Compact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권과 노동 기준, 환경 분야에서 10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10가지 원칙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Fundamental Principles of Rights at Work', 'Rio Principle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유래된 것이다.⁹⁾

ISO의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의미하는 'CSR'에서 'C'를 삭제한 'SR'로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ISO의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타당성 검토가 논의된 이래 SR(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가 2004년 4월 30일 발간되었으며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제1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회의를 개최하여 43개국 ISO 회원국과 24개의 국제기구(ILO, UNCAD 등)에서 300여명이 참가하여 SR 표준화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의 조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

8) OECD Guideline for MNEs,

9) <http://www.unglobalcompact.org>

였다. 그 후 매년 표준화 작업을 위한 국가간, 섹터가 국제조직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ISO에서는 2009년을 목표로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마련을 마치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으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회적책임을 연계한 표준화 작업으로는 CR 인덱스가 있다. CR 인덱스는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개발한 인덱스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전략에서부터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수를 매기고 있다. 전략, 경영과의 연계, 운영(지역사회, 환경, 시장환경, 근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CR 인덱스는 특히 사회적책임과 환경부분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 인덱스로서 2002년 처음 인덱스를 발표한 이래 참가 기업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들 순위의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¹⁰⁾.

그 밖에 비영리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으로는 AA1000, Global Sullivan Principles, GEMI(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의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성과 등이 있어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5. 기업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역시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 중심에서 경영 중심으로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의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제 1그룹과 제 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그룹은 기업의 경영과 직접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주주,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관계사 들이며 제 2그룹은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위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 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과 이해가 달려있는 제 1그룹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 본연의 목적 실현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제 2그룹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

10) <http://www.bitc.org.uk>

향력이 증가함에 기업들이 이들 제 2그룹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투명성과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RI 등 모든 표준화 작업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다.

6.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와 같이 기업들의 무역거래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표준화 작업은 제3자 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가입과 보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 당장 표준화 작업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사회, 고객, 언론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과거 기업이 관행대로 행해온 분식회계, 비합리적 지배구조, 분식회계, 인권유린, 환경훼손과 같은 관행은 비록 법적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외국의 기업에 비해 많은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¹¹⁾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책임의 수행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NGO나 외부의 환경, 윤리, 지배구조, 인권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압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7. 미치는 글


2006년 1월 27일 이노베스트사에서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에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6년 글로벌 100 지속가능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¹²⁾ 100대 기업에는 영국 기업이 30개, 미국 기업이 17개 그리고 일본 기업이 10개 포함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확산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이루어지

11) 전경련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경상이익대비 2%선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지출이다.

12) www.innovestgroup.com

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고객과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내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마지못해 낸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공헌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배구조, 노사관계, 인권, 환경, 사회공헌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들을 이행할 때야 비로소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현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의 성장은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와 기업들도 탄생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한국기업이 늦게나마 사회적책임의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스스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 윤리, 지역사회 등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과 사회가 파괴되고 인권이 상실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손상 받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과 사회가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경영진, 주주의 주장 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기업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참고 문헌

- Archie B. Carroll & Ann K. Buchholtz. (2003).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
- Charles O. Holliday, Jr. Walking The Talk -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2002.
- Dahlsrud Alexander(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 Soc. Responsib. Environ. Mgmt. 15, 1.13, Published online 9 November 2006 in Wiley InterScience
- Khurshid Ahmad, Making Globalization Good, ed. John H. Dunning.(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K. Gordon(2001), "OECD Guidelines and Other Corporate Responsibility Instruments: A Comparison"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01/5, OECD Publishing.
- Pricewaterhousecoopers,(2002) 5th Annual Global CEO Survey
- Simon Zadek,(2004) Alex MacGillivray, Accounting for Change: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ed. Ed. Simon Zadek, Greenleaf Publishing Limited
- Welford, R.(1996),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Earthscan, London.

<http://www.bitc.org.uk>
<http://www.ethibel.org>
<http://www.ftse4good.com>
<http://www.gemi.org>
<http://www.unglobalcompact.org>
<http://www.globalreporting.org>
<http://www.iisd.org>
<http://www.innovestgroup.com>
<http://www.kld.com>
<http://www.sa-intl.org>
<http://www.sustainability-indexes.com>
<http://www.un.org>

ISO 26000이란?

ISO 26000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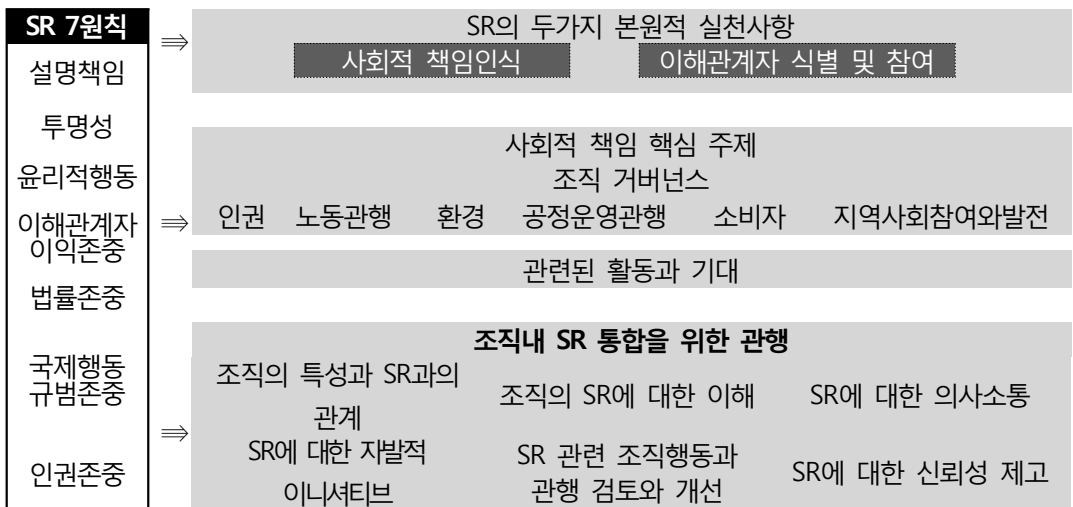
ISO 26000 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은 사회적책임의 원칙과 사회적책임을 구성하는 쟁점,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인 실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 뿐 아니라 정부 및 NGO, 노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사회적책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물론 ISO 26000 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의 제정 배경이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모든 조직을 위한 사회적책임(SR)으로 확장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NGO들의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라는 점에서 그 확대의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ISO 26000 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은 경영시스템 표준이나 인증을 위한 표준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을 지닌 지침 표준이다.

ISO 26000은 2004년 10월 제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문서에서 유래합니다. 사회적책임(SR) 표준 개발을 위한 신규작업항목 제안서의 문서번호가 ISO/TMB N 26000이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2005년 1월 ISO 회원국의 찬반투표를 통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책임 작업반(WG SR)의 제 1차 총회(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부터 ISO 26000 이라는 규격 번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ISO 26000은 전세계 91개국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발효될 예정입니다.

ISO26000 구조

ISO26000은 UN,ILO,OECD의 SR에 관련 국제규범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SR관련 법규 및 규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ISO2600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윤실 교회의 사회적책임 관련 활동내역

범주	사업명
신뢰회복운동	1.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2007.5) 2.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2007.11)
저작권운동	1.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2007.5) 2.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 가이드 북 발간(2007.11)
공공신학	1. 공공신학 책자 발간(2009.4)
사회적책임	1.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2008.10) 2.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2009.4) 3.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문화편(2009.6) 4.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대안경제편(2009.9) 5.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교육편(2009.12) 6.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2009.11/ 2010.8)
신뢰도 여론조사	1.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8.11) 2.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9.11)
기타	1. 시민단체 사회적책임운동 헌장과 행동규범 선포(2007.6) 2.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2010.4)

한국교회신뢰지표 98개 항목과의 조율 작업

기윤실에서는 2007년 한국교회신뢰지표(책임연구원 : 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개발한 바 있다. 한국교회신뢰지표는 교회의 비전과 리더십, 재정 및 인력운영,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도의 삶,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회 신뢰성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표준 가이드라인”의 모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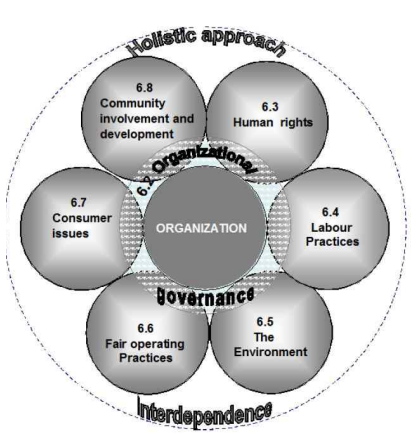
• 한국교회신뢰지표 구성(98문항)

항목	문항수	건전성	정직성	공평성	투명성	효율성	의사소통
교회신뢰 기본문항	13						
비전과 리더십	비전	24	11				
	리더십(담임목사)		13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26	12				
	재정관리		14				
사회적 책임	11						
성도의 삶	12						
설문자 기초문항	12						

• 영역별 문항 샘플

영역	질문
비전과 리더십	1. 우리 교회는 사명선언문(목회철학, 비전선언문, 장기목표, 설립정신 등)이 있다.
	2. 우리 교회의 사명(목회철학, 비전, 목표, 정신 등)은 교회의 모든 조직,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이 반영되어 있다.
	3. 우리교회의 리더십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한다.
	4.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을 학력,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5.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의사항을 교회운영에 반영한다.
조직 운영	6. 우리 교회는 출석교인 수, 각 사역의 운영 및 성과를 교회 내외적으로 정직하게 보고한다.
	7. 우리 교회의 사역은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위임되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8. 우리 교회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9. 우리 교회는 재정관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10. 우리 교회의 예산 및 결산내용은 전교인에게 공개되며, 원하는 경우 성도는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11. 우리 교회는 환경보호(분리쓰레기수거, 일회용 컵 사용절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앞장선다.
	12. 우리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지역사회봉사, 교회시설 공개, 장애인 사역, 탁아소운영, 구제활동 등)은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3.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사역(연합예배, 연합바자회, 연합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4. 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사역(사회복지, 환경보호, 연합활동, 사회정의 등)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5. 우리 교회의 사회 구제 헌금액은 적당한 수준이다.
성도의 삶	16. 나는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
	17. 나는 우리 교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었다.
	18. 우리 교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19. 나는 교회의 교제, 봉사, 나눔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참여 했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느꼈다).
	20. 우리 교회는 가정/직장/사회생활 사역(결혼학교, 부부교실, 재정교실, 노인학교, 상담실, 기업선교 등)에 대해 교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교회운영에 반영한다.

• 한국교회신뢰지표 vs ISO 26000 7가지 핵심이슈



기타 자료

GUIDE STAR(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정보시스템)

1. GuideStar International은?

- Mr. Buzz Schmidt 회장이 1994년에 미국의 비영리 부문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인 GuideStar US를 설립하면서 설립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Mr. Buzz Schmidt 회장은 2002년, 영국 런던으로 가서 GuideStar UK를 설립하였다. 현재,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미국, 영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아공, 캐리비안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추진 중이다.

2. 미션과 비전

- 가이드스타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가이드스타 회원국들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NPO, NGO 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다. 가이드스타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국경을 초월하여 비영리조직들의 협력과 공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박애주의의 실천에 있다.
- 시민사회정보시스템으로 비영리기관의 활동과 재무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비영리조직 활동이 더 명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되고, 일반시민들의 신뢰구축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이드스타 미국(1994) 설립 이후 86만개의 비영리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기관들의 신뢰향상으로 일반시민들의 기부가 늘어나, 등록기관의 수와 자료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가이드스타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주간 매개자로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시민사회, 정부, 인가기관, 연구기관 및 기금 모집자들은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비영리조직을 위한 평등한 공간(가이드스타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대규모 비영리 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덜 알려진 수많은 소규모 비영리기관들에게 좀 더 효율적 도움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전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비영리기관들의 정보(활동 및 재무회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관대하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 기부자와 기부금 조성자들이 가이드스타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개인의 가치에 맞는 비영리조직을 찾아내고 비교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을 신뢰하고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될 것이다.

3. 시민사회정보시스템 서비스 (www.guidestar.or.kr)

- 시민사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_ 기본 서비스 : 비영리단체의 미션, 목적, 연락처, 재정정보, 사업내용 및 성과, 이사회 등 /회계·재무 :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세입세출 결산서, 기타자료첨부 /연봉수준 : 연봉 정보, 동종단체의 연봉수준 비교 가능 /분석보고 : 회계정보(수입, 자산, 지출 등)에 대한 변화 추이 /통합자료 : 조직, 직원, 기부자에 관한 자료 /비영리 지위 : 기금 주 지위, 세금공제비율, 면세 지위 등 /전문가용 : 비영리조직에 대한 다양한 분석자료 /개별정보 :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금주 : 기금 주들을 위한 정보, 기부현황, 면세지위 등
- 시민사회정보시스템 서비스 Stakeholder_ 시민 사회 단체 : 시민사회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의 신뢰성 향상 /기금제공자 : 기금을 희망하는 단체들과 기금제공자 연결 /기부자 : 일반이 쉽게 간편하게 기부를 원하는 단체검색 /정부 규제 기관 : 비영리기관의 데이터와 통계를 분석하여 관리·감독향상 /정부정책 결정자 : 시민사회의 기부문화와 NPO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입안 시 참조 /전문가집단 : 회계사, 변호사들이 NPO 고객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성 /정부통계학자, 학술연구자, 정책분석가 : 정부통계의 기초가 정보와 학술 자료 도움 /제3기관들 : 기금모금을 지원 또는 NPO를 인가·평가하는 타 기관에 DATA제공 /시민사회 : NPO의 신뢰성 제고로 일반시민들의 기부문화 활성의 기여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ECFA : 미국복음주의재정책임성협의회)

1. What is ECFA?

- ECFA는 기독교비영리선교기관들이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7대 표준'에 충실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도록 돕는 공식인가 기관. 1979년에 설립된 ECFA는 1,200개 이상의 복음주의 기독교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단체의 유형은 교회, 성경번역회, 일반 선교단체, 서비스 단체, 아동보호소, 교육단체, 문화 선교단체, 재단, 연구소, 청소년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함. 법적으로 면세자격과 비영리단체 지위의 획득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며, 회비는 각 단체의 현금 기부금 수익 총액에 따라 차등하여 30단계로 나눠 책정됨.

2. MISSION

- ECFA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책임성 기준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들이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3.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7대 표준

- ECFA의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7대 표준'은 지배구조의 절차적 민주성, 재무 투명성, 모금활동의 정직성, 목적에 맞는 재정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춤.
 - Standard 1 - 정관상 성경적 정체성과 청지기적 재정집행에 대한 명문화 여부
 - Standard 2 - 다수의 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 Standard 3 - 외부 감사를 거치고 회계표준에 맞춘 재정보고 작성 여부
 - Standard 4 - 목적에 맞는 재정 사용을 위한 통제장치 여부
 - Standard 5 - 공식 요청시 재정 보고서의 공개 여부
 - Standard 6 - 이해 당사자의 배제 장치, 공정한 복수견적 원칙 등의 적시 여부
 - Standard 7 - 모금에 대한 세부 실행 기준 적용 여부(2007년에 회원기관과 교회가 더 높은 수준의 탁월성을 갖도록 유도하기위해 기관과 교회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Best Practice(최상의 업무처리 관행)을 새로이 제정함)

4. 회원 단체의 유익

- '신뢰성 증진 및 유지 / 인지도 상승 / 미디어 노출' 효과
- '회원확대 / 모금증대 / 잠재적 기부자 발굴' 효과
- '평가 및 상담 / 최신 정보 / 법률자문 / 회계감사 서비스' 제공

5. 후원자에 대한 서비스 (www.ecfa.org)

- ECFA는 기부자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회원단체들의 정보공개 의무는 기부자가 어느 회원단체이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에서 모든 회원단체들의 엄선된 재정정보와 기부가이드라인, 기부자의 권리규정, 기부자(행위)에 관한 유용한 정보 조회 가능. 단체 실무자들이 기부자에게 다양한 이슈에 관해 정보를 전달해 주는 쌍방향 소통 가능.

6. 회원단체의 평가방식 (7대 표준에 의거, 세 가지 방법으로 회원단체 점검)

- 첫째, 모든 회원단체들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비영리단체세무보고서, 임금지급내역, 기금모금양식, 이사회 명단, 정관개정사항을 포함하여 7대 표준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 둘째, 매년 전체회원의 10%는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사를 통해, 연례 회원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을 검증하고 회원으로서 7대 표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회원 기관들에게 지원책을 제공. 최근까지 약 750개 기관의 현장평가 수행.
- 셋째, 회원교회에 대한 부정신고(내부고발) 등에 응대. 모든 신고사항은 7대 표준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위해서 철저하게 조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1. What is GRI & G3 가이드라인?

- 전 세계에 통용되는 조직(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로서, 1997년 세리즈원칙을 제정한 미국의 NGO(국제비정부기구)인 세리즈(환경에책임있는 경제를위한연합)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구.
- GRI 가이드라인은 조직(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분야의 성과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로서, 보고 원칙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 성과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 제3판(G3: Generation 3)을 제정하였다.

2. G3 가이드라인 구성

- 1부 Reporting Principles and Guidance (보고 원칙 및 지침) : 보고 내용 및 품질, 경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완전성, 균형, 비교가능성, 정확성, 적시성, 신뢰성, 명확성, 통제력, 중대한 영향력'의 11개 원리 설명
- 2부 Standard Disclosures (표준 공시안)
 - Profile (프로필) : 전략, 프로필, 지배구조 등 조직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적인 배경 설정
 - Management Approach (경영방식) : 특정 영역에서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하고자 보고 조직이 해당 주제 범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

- 경제 측면 경영방식(경제성과/시장지위/간접 경제효과)
- 환경 측면 성과지표(원료/에너지/용수/생물다양성/대기 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제품 및 서비스/법규 준수/운송/전체)
- 사회 측면 성과지표
 - 1) 노동여건 및 관행(고용/노사관계/직장 보건 및 안전/교육 및 훈련/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 2) 인권(투자 및 조달 관행/차별 금지/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아동 노동/강제 노동/보안 관행/원주민 권리)
 - 3) 사회(지역사회/부패/공공 정책/경쟁 저해 행위/법규 준수)
 - 4) 제품 책임(고객 건강 및 안전/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고객개인정보 보호/법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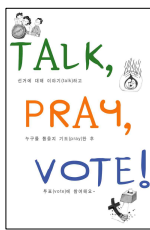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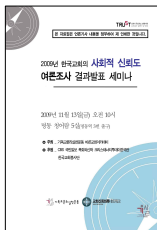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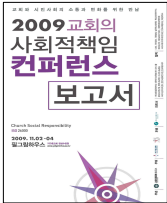
- Performance Indicators (성과지표) : 조직의 경제/환경/사회 성과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 제시

3. 웹사이트 : www.globalreporting.org

기윤실 교회신뢰운동/사회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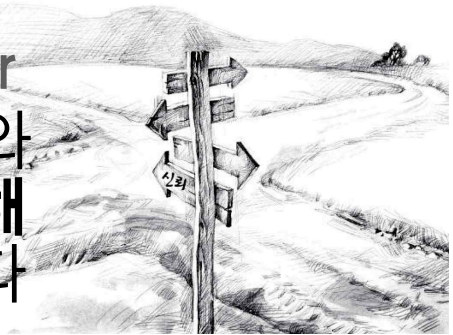
관련 도서/자료집 목록(2007년~2010년)

범주	사업명
교회신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2007.5) •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2007.11)
저작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2007.5) •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 가이드 북 발간(2007.11)
공공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신학 책자 발간(예영, 2009.4)
사회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2008.10)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2009.4)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문화편(2009.6)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대안경제편(2009.9)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교육편(2009.12) •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자료집 / 보고서(2008.11)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보고서(2010.1)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2010.2) • 2010년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백서(2010.7)
신뢰도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8.11)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9.1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사회적책임운동 헌장과 행동규범 선포(2007.6) •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 자료집(2007.6) •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8.4) •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인의 선택 세미나 자료집(2008.4) •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예영, 2009.2) •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2010.4) • 6.2 지방선거와 기독교 - 기독교권자 자료집(2010.5)



모든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trusti.kr)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단행본 제외)

www.trusti.kr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 (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기독교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2010년 기윤실 6대 주요사업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강영안(서강대 철학과 교수),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목사), 박은조(분당생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 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